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 멀티도어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

책임작성 | 최수정 연구위원 (02-707-9876, sjchoi@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
3. 일본의 중소기업 전용 사적 정리제도
4. 결론

| 요약

- 최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징후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의 회생·파산 신청건수는 경기후행지수이므로 아직 중소기업 도산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19가 진정된 이후에도 도산 위험을 직면한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코로나 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선제 대응방안으로는 한계
- 현행 주요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사적 구조조정제도와 소위 '법정관리'라고 하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가 있음
 - 공적 구조조정절차인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절차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 등으로 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짐
 - 한편 사적 구조조정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구조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
 - 이를 통해 회생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유연성·비공개성·절차의 간소화·신속성 등의 사적 구조조정제도의 장점과 중립성·공정성 등의 공적 구조조정제도의 장점에 근거하여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3자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
 - 이 협의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채무조정 및 재생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최근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코로나 특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선제적으로 대처
 - 협의회 절차비용의 3분의 2가 국가위탁사업비(보조금)에서 지출되어 재생의지를 가진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및 차입금의 상환조건 변경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또는 도산절차로 가기 이전 멀티도어(Multi-Door)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
 -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이 파산·회생절차로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door)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멀티도어 (Multi-Door) 체계를 구축한다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임
 - ‘제3자’가 주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는 공정성, 신속성, 유연성, 비용부담의 완화, 비공개성의 장점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구체적 입법방안으로 ①「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 또는 ②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부처가 가칭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절차적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추후 법원의 도산절차까지도 연계될 수 있어 법원의 부담 완화까지도 기대

1. 문제의 제기

■ 코로나 19 이후 극심한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타격으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도산 위험 증가가 예견됨

- ‘20년 3월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 19가 급격하게 확산되어 대내외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이후 극심한 장기적 경제침체 예상¹⁾
-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고, 고용지표와 체감지표 부진이 심화되어 불확실성 증가²⁾
- 대기업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몰릴 경우 관계협력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중소기업 파산으로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있음³⁾

■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이익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부실징후기업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소기업 도산위기가 급증⁵⁾

- ‘19년 정기 신용위험 정기평가⁶⁾ 결과에 따르면 신용등급 C와 D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은 ‘18년보다 약 12%(21개) 증가한 201개사로서 구조조정대상 210개 기업 중 96%가 중소기업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치

■ 중소기업의 회생, 파산 신청건수는 경기후행지수이므로 아직 중소기업 도산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도 도산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올해 3월 법인 파산신청은 총 101건으로 2019년 3월 66건에 비해 53% 증가하였고, 올해 2월 80건에 비해 26.2% 증가
- 특히 코로나 위기가 심각했던 대구의 올해 3월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7건으로 지난 2월 2건에 비해 약 3배 증가

1) 중소기업연구원, KOSBI중소기업 동향, 2020.4.24., 1면.

2) 중소기업연구원, 「KOSBI 중소기업 동향(20년 4월)」, 2020.4.24., 1면

3) 최근 美 WSJ는 Covid-19 사태가 올 1사분기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특히 중소기업 파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함(Wall Street Journal, “Bankruptcy Pros Want Protections Broadened to Blunt Coronavirus Impact,” 2020.03.23. 일자)

4)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함(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7호)

5) 중앙일보, “경기 한파에 ‘퇴출 위기’ 중소기업 145곳…3년 전보다 40곳 늘어,” 2019.12.12.

6) 금융감독원, “2019년 정기 신용위험 정기평가,” 2019.12.12.

〈그림 1〉 최근 3월간 법인파산 신청건수



자료: 법원통계월보(2020)를 근거로 저자 작성
주: 총계는 전국 총계

〈그림 2〉 최근 3년간 법인파산 신청건수



자료: 법원통계월보(2020)를 근거로 저자 작성
주: 총계는 전국 총계

- 올해 3월 회생(합의) 신청건수는 총 80건으로 전월 66건 대비 1.2배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73건보다 증가

〈그림 3〉 최근 3월간 회생(합의) 신청건수



자료: 법원통계월보(2020)를 근거로 저자 작성
주: 총계는 전국 총계

〈그림 4〉 최근 3년간 회생(합의) 신청건수



자료: 법원통계월보(2020)를 근거로 저자 작성
주: 총계는 전국 총계

-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코로나 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선제 대응방안으로는 한계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파산으로 몰리기 전에 조기에 중소기업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및 차입금의 상환조건 변경이 매우 중요
 - 일본은 중소기업 전용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절차 중 하나로 코로나 특례 채무조정절차(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特例リスケジュール)를 신설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도산에 신속하게 대응

2.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

가. 개요

■ 현행 주요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사적 구조조정제도와 ‘법정관리’라고 흔히 불리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가 있음

- 기업구조조정 및 회생을 목표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같지만, 채무조정방식, 적용 대상 기업, 대상 채권 등에서 차이가 있음

〈표 1〉 현행 주요 기업구조조정제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회생절차
채무조정방식	채권금융기관 주도	법원 주도
근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 기업	기업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	기업신용위험평가 D등급 기업
대상 채권	금융채권	상거래 채권 포함 기업관련 모든 채권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⁷⁾

- 원칙적으로 금융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시작 가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은 회사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5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에서 신용공여액 요건 삭제 이후 중소기업 포함
- 다만, 신용공여액 5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

7) 원칙적으로 금융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모두 6차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18년 6월 기한 만료로 폐지되었으나, 2018년 11월 5년 한시법으로 부활

- 은행에서 채무자의 신용위험 평가 및 채무자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
 - 채무자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
 - 소집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개최
- 동 제도는 법원의 회생절차와는 달리 절차 진행을 공개하지 않고, 다수결원칙에 근거해 효율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임직원 이탈, 거래처 상실을 방지
 - 상거래 채권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신용 유지에 도움
- 다만 선제적 중소기업 회생방안으로는 한계
-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공정성 또는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소수의 금융기관 채권자가 채권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아 일반 개인 금융채권자가 많은 경우, 채무조정을 위한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움

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 소위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
-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신속한 환가 및 배당을 최우선 목적으로 함⁸⁾
 -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며 법적 강제력을 통해 투명성을 보장
 - 법원은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를 2011년 3월부터 시행

8) 회생절차는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financial distress)에 빠진 채무자이며 경제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economic distress)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재정적 파탄이란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적기에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채무자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채무자의 부실한 재무구조에 기인한 것을 말함
반면, 경제적 파탄이란 채무자의 영업능력에 문제가 있어 채무자가 파탄에 처한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의 수익력이 저하되어 그 사업에 제공된 자산으로 계속 그 사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자원의 활용 및 분배라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을 말함(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3면)

-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노출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2013년 5월부터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제도 등을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주관으로 하여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
 -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수립 컨설팅으로 나누어 진행
 - 2018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진행을 전제로 하는 진로제시컨설팅 절차, 소위 약식진로제시컨설팅 절차를 진행하여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서울회생법원은 여러 재기지원제도를 회생절차와 연계하여 압축적·효율적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2017년 11월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 이하 ‘S-Track’)을 시행
 - S-Track은 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신청 전 지원프로그램, 신청지원 프로그램, 절차지원 프로그램, 복귀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S-Track은 부채 150억 원 이하인 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벤처기업, 경영자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동시진행이 필요한 기업,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기업 등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함
 - 실무상 S-Track 지원신청을 하는 모든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S-Track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투명성은 보장되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절차 진행도 공개됨
 - 공개성으로 인한 낙인효과로 채권자, 소비자 등에게 부정적 인식의 확산 가능⁹⁾
 -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낙인효과로 인해 신용 추락할 수 있고, 기존의 거래관계 상실 및 운영자금 조달 애로로 회생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9) 회생 기업은 서울보증보험 이외에 이행보증이 거의 발급되지 않으며, 현금을 납부해도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기가 어려움. 또한, 관공공사를 수주받을 수 없으므로 회생신청을 했다가 추후 취소하는 기업들이 있음

3. 일본의 중소기업 전용 사적 정리제도

가. 사적 정리절차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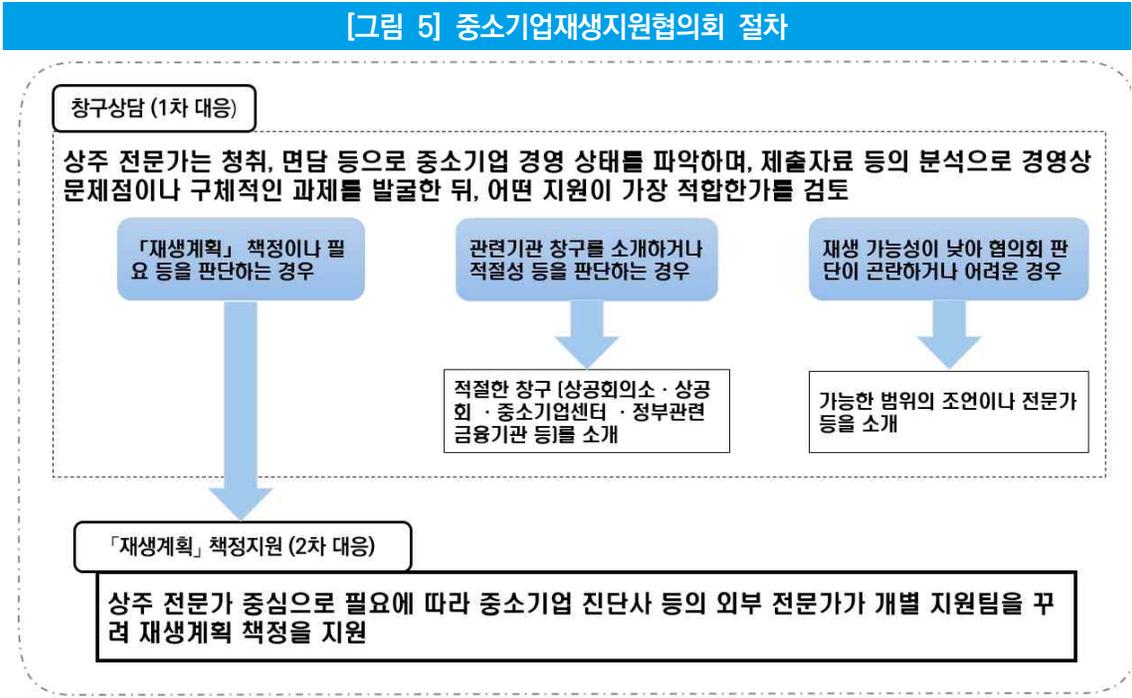
- 일본에서는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사적 정리절차가 다양하여 기업의 회생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¹⁰⁾
 - 일본에서 사적 정리절차가 신속성, 간소한 절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유연성, 비공개성 등을 이유로 선호됨
 -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적 정리절차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절차가 활발하게 이용
 - 법률에 근거한 사적 정리절차로 사업재생 ADR(법적 명칭은 ‘특정인증 분쟁해결절차’)¹¹⁾,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절차,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 REVIC) 절차 등이 있음

나.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절차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로 설치된 공적 기관임
 - 절차는 법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적 절차로 분류됨¹²⁾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무조정과 중소기업 재생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활성화 요인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절차는 기업의 재무개선과 동시에 사업개선에 중점
 -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을 위한 전문가 조언, 재생계획 수립, 재생계획 이행상황의 모니터링 등 재기의지를 가진 중소기업을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제1차 대응으로 창구 상담단계에서 기업 제출자료 및 대표 면담을 통해 중소기업 실태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지원절차를 결정

10) 김영근.(2019), “일본 기업구조조정 제도 연구-법정의 절차와 법정절차의 연계를 포함하여,” 법무부 용역보고서, 16면
 11) ADR은 재판 외 분쟁 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칭으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의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당사자를 위하여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임
 ADR 절차는 「재판 외 분쟁 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인증ADR기관)가 그 절차를 실시함
 12) 중소기업청(2019), 중소기업청지원책のご案内, 5면

- 재생계획 수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차 대응으로 주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 기업현황 및 재생 가능성을 설명 후 채권자 의향을 확인



자료: 中小企業庁, 中小企業再生支援スキーム(2016) 제1항

■ 대상 채무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인 소규모사업자를 포함¹³⁾

- ① 과잉채무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경영 곤란에 빠져 자력에 의한 재생이 곤란할 것
- ② 재생의 대상인 사업에 수익성 또는 잠재성이 있는 등 사업 가치가 있고 관계자의 지원에 의한 재생의 가능성이 있을 것
- ③ 법적 정리를 신청하는 것에 의하여 채무자 신용이 저하되고 사업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등 재생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 ④ 법적 정리 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예상이 있는 등 채권자로서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것

■ 특히 대출조건 변경 등의 리스케줄, 즉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게 많이 활용되고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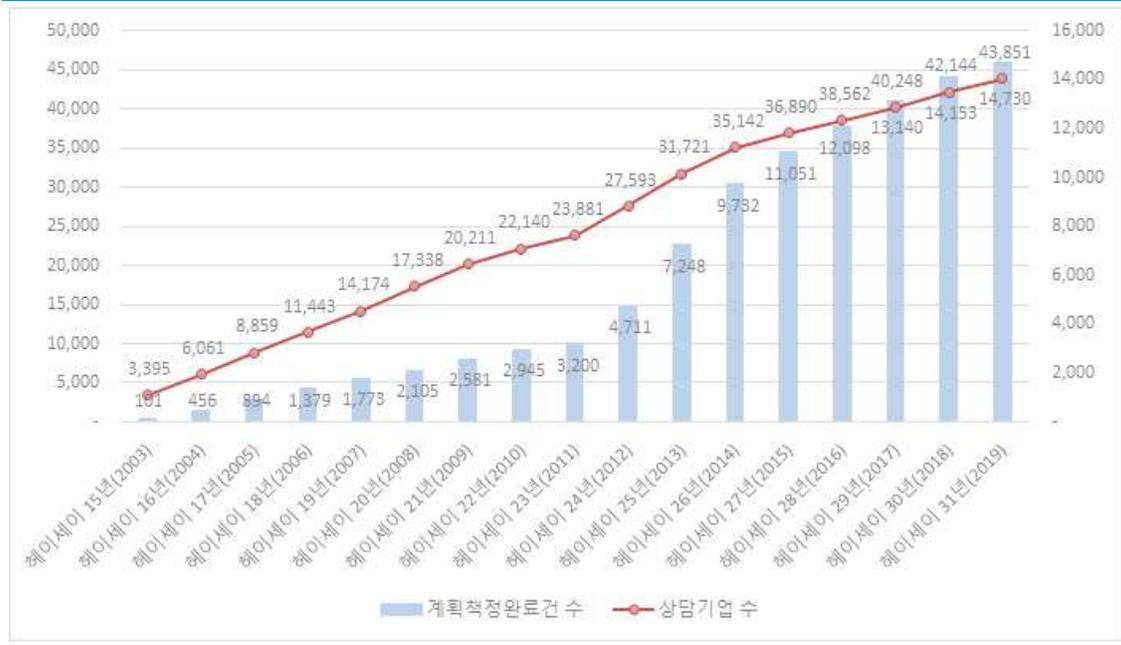
13) 中小企業庁(2016), 中小企業再生支援スキーム 제1항

- 리스케줄은 본격적인 재생계획을 성립시키려 해도 즉시 실행할 수 없는 경우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유예기간, 즉 잠정 리스케줄 기간을 설정하고 충분히 준비한 후 본격적인 재생계획을 성립시키려는 목적
 - 급변하는 외부환경으로 인해 지원대상기업의 매출액의 회복을 예측하기 어렵고, 회계 등이 정비되지 않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음
 - 리스케줄 기간에 본격적인 재생계획의 책정·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경영자 의식의 개선 여부, 지원대상 기업의 매출액 회복 여부 등을 검토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특례 채무조정을 위한 내용, 절차, 기준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선제 대응¹⁴⁾
- 코로나 특례 리스케줄 프로그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① 최근 1개월 매출액이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보다 5% 이상 감소한 사람
 - ② 업력 3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경우 최근 1개월의 매출이 다음 중 하나보다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자
 - a. 지난 3개월(최근 1개월을 포함)의 평균 매출
 - b. 2019년 12월 매출
 - c. 2019년 10월~12월 매출의 평균 금액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총괄 책임자는 당해 중소기업의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로 특례 리스케줄 계획책정 지원의 시작 여부 판단
- 특례 리스케줄 계획책정 지원의 시작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상담기업 경영자에 대해「경영자 보증지침」을 활용하여 보증채무 정리 등을 지원받거나 변호사회 등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음
 - 특례 리스케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① 향후 6개월간의 자금 사정 전망이 인정되는 경우
 - ② 금융 기관 또는 정책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향후 6개월간의 자금사정 전망이 인정되는 경우
 - ③ 기타 총괄 책임자 또는 총괄 책임자 보좌가 상담 기업의 업종 산업의 특성에 따라 상담 기업의 원금 상환 유예를 요청할 경우 사업 개선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

14) 경제산업성(2020.4.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특례 리스케줄 실시요령(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特例リスケジュール実施要領)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2003년 2월부터 2019년 말까지 43,851개 기업을 상담했고, 14,730개 회사의 재생계획책정 지원을 완료하는 등 활발한 성과를 보임¹⁵⁾

[그림 6]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창구상담 기업수와 계획책정 완료건수(누적)



자료: 中小企業庁(2020)

- 일본에서의 사적 정리절차 건수가 증가되는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때문
 - 협의회 절차는 채무개선까지 가지 않는 채무상환기간 유예 등 리스케줄 안건이 대부분임
 - 협의회 절차비용은 국가의 위탁사업비에서 지출되어 중소기업의 재생비용부담이 크게 완화
 - 절차비용의 3분의 2가 보조금에서 지원되므로 중소기업은 절차비용의 3분의 1만 부담

15) 통계자료는 <<https://www.chusho.meti.go.jp/keiei/saisei/kyougikai/index.htm>>

4. 결론

■ 최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징후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는 대기업의 회생절차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
 -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비용, 절차비용을 위한 예납금 등이 중소기업에 커다란 부담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회생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보유한 자금을 거의 소진한 이후 최후로 회생절차 신청 검토¹⁶⁾
 -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부도 우려 또는 정보부족 등으로 충실한 전문가 자문을 받지 못해 적절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회생에 실패할 확률이 높음

■ 도산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방위적인 회생지원제도 필요

- 중소기업은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선제적 사업진단 및 컨설팅 기능 필요하나 현재의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 노출
 -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 지원사업’이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통합운영으로 예산 삭감 및 지원대상 업종 축소
 - 예산이 삭감되었고, 지원대상 업종이 제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서 2020년에는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인 제조업으로 축소
- 공적 구조조정절차인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절차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 등으로 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짐
- 한편 사적 구조조정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구조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

- 이를 통해 회생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유연성·비공개성·절차의

16) 통상 회생절차 신청하기 6개월 이전부터 운영자금 조달의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함

간소화·신속성 등의 사적 구조조정제도의 장점과 중립성·공정성 등의 공적 구조조정제도의 장점에 근거하여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3자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

- 이 협의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중소기업 의 채무조정 및 재생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최근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코로나 특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선제적으로 대처
- 협의회 절차비용의 3분의 2가 국가위탁사업비(보조금)에서 지출되어 재생의지를 가진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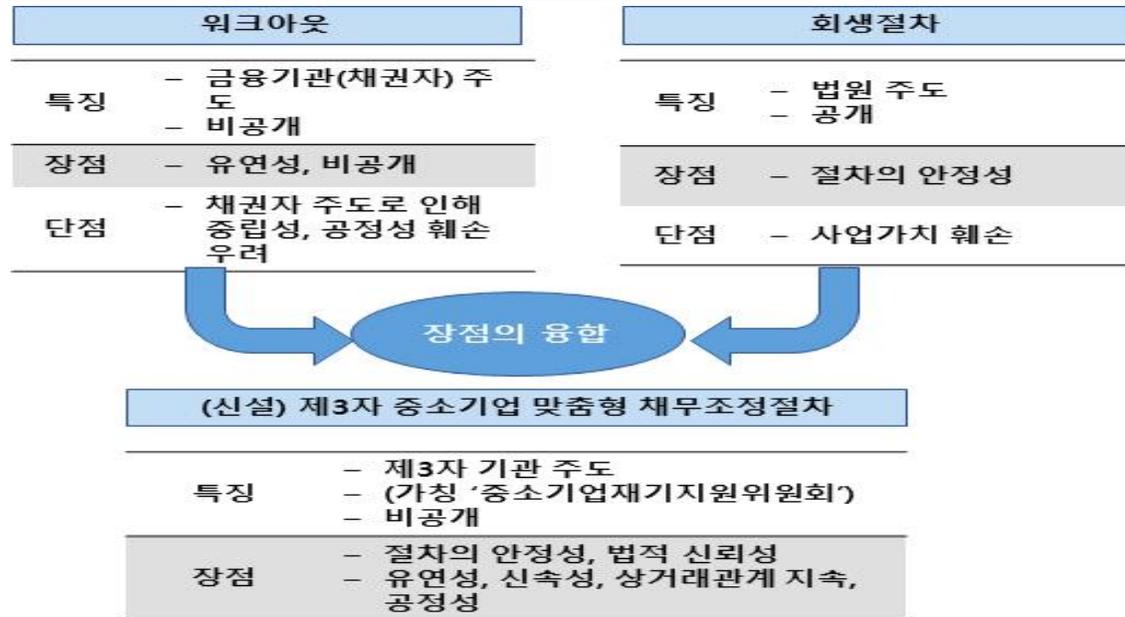
■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및 차입금의 상환조건 변경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또는 도산절차로 가기 이전 멀티도어(Multi-Door)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파산으로 몰리기 전에 조기에 중소기업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및 차입금의 상환조건 변경이 매우 중요
-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이 파산·회생절차로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door)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멀티도어 (Multi-Door) 체계를 구축한다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임
- ‘제3자’가 주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는 공정성, 신속성, 유연성, 비용부담의 완화, 비공개성의 장점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구체적 입법방안으로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 또는 ②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부처가 가칭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절차적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추후 법원의 도산절차까지도 연계될 수 있어 법원의 부담 완화 등의 경제적 효과도 예상됨

[그림 7]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안)와 기존 제도와의 비교



참고자료

〈국내자료〉

금융감독원(2019), “2019년 정기 신용위험 정기평가”

김선경 외(2018), “영국과 일본의 도산실무가 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김영근 외(2019), “일본 기업구조조정 제도 연구-법정의 절차와 법정절차의 연계를 포함하여,” 법무부 용역보고서

박재완(2019), “중소기업 구조조정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중소기업연구원(2020), 「KOSBI 중소기업 동향(20년 4월)」,

중앙일보, “경기 한파에 ‘퇴출 위기’ 중소기업 145곳·3년 전보다 40곳 늘어”, 2019.12.12.일자

최수정 외(2019),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회생·파산 해외지원 사례 연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외자료〉

경제산업성 웹사이트 <<https://www.chusho.meti.go.jp/keiei/saisei/index.html>>

中小企業庁(2016), 中小企業再生支援スキーム

中小企業庁(2019), 中小企業庁支援策のご案内

Wall Street Journal, “Bankruptcy Pros Want Protections Broadened to Blunt Coronavirus Impact,” 2020.03.23.일자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이병헌

편집인 : 전인우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